

---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국회의원 백혜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국회의원 백혜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백혜련 국회의원</li></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li></ul>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li></ul>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li><li>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li><li>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li><li>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li><li>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li><li>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li></ul>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참석자</li></ul>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프로그램

인사	백혜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좌장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제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론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 목 차

1. 인사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
2. 발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7
3. 토론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33
4. 토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39
5. 토론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45
6. 토론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61
7. 토론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71
8. 토론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 77
9. 첨부 · 20대 국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을  
국회의원 백혜련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쁘신 와중에도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장까지 맡아 주셨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재판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보통의 재판보다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이를 위해 재판장이 판결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게 하고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치 단심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사실상의 2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판에 비하여 항소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판결서 이유 기재가 생략됨에 따라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항소율은 2%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법원에 접수된 제1심 민사본안 사건 중 소액사건이 72.1%에 이릅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액사건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4월 저는 고지되는 판결이유를 법원으로 하여금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 작성이 최선이겠지만, 법원의 실무적 부담을 감안한 절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실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해주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님 그리고 지정토론을 해 주실 대한변협 김진욱 변호사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님,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신지식 변호사님, 법무법인 디딤돌 심제

원 변호사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최미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행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 실질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 제





| 발 제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I. 들어가며

소액사건 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sup>1)</sup> 여기서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절차가 지향하는 이상은 적정·공평·신속·경제이나(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은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법상 민사소송법의 특례로는 ①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법 제3조), ②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③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법 제5조), ④ 이행권고결정제도(법 제5조의3), ⑤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⑥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7조의 2), ⑦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법 제8조), ⑧ 심리절차상의 특칙(법 제9조), ⑨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법 제10조), ⑩ 판결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등이 있다.

위 소액사건심판법상 민사소송법의 특례 중 ①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법 제3조), ② 판결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가 헌법에서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속성과 경제성의 중점을 둔 나머지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

1)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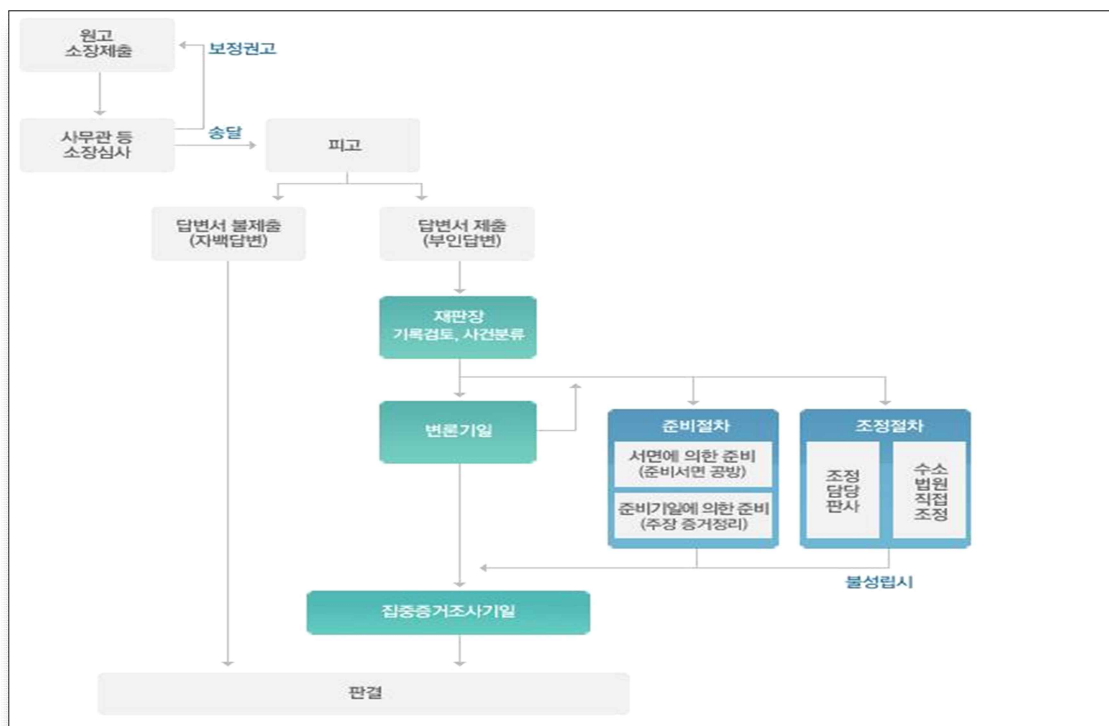
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2017년 1월부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개정에 따라 소액사건의 대상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소액사건의 사건 수의 증가와 기존에 단독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던 일부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위와 같은 추세에서 과연 소액사건심판이 헌법상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본안 사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등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침해당하고 있다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소액사건재판의 절차<sup>2)</sup>

### 1.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2)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절차안내 → 민사 → 재판 → 사건관리개요

## 가. 소의 제기 및 소장 부분(副本)의 송달(送達)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분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및 제256조제1항).

소장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주소보정(補正)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게 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참조),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제3항).

## 나.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피고가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279조제1항, 제280조제1항 및 제285조제1항 참조).

- ①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정리
- ②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現出)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쳐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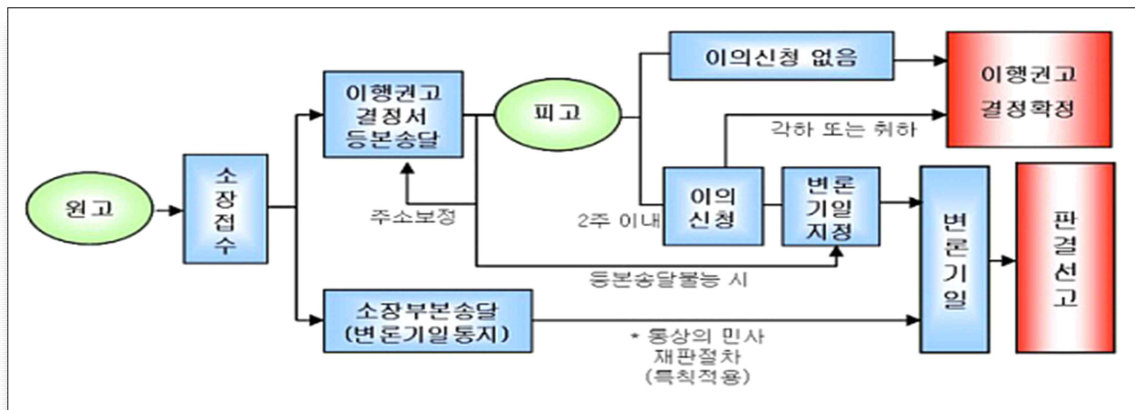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및 제256조제1항).

#### 다.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의 쟁점 및 증거가 정리되면 재판장이 미리 지정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 가능하면 최초의 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쳐 변론을 종결하지만(「민사소송법」 제287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72조제1항 단서).

쟁점 정리기일이 끝나면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이어지는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3조).

### 2.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차이가 있다.(그러나 소액사건절차는 제1심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참조) 소액사건이라도 상고 및 재항고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외에는 민사에 대한 통상의 항고심절차에 따르게 된다.)

## 가. 구술에 따른 소 제기

소장이라는 서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구술(具述)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나. 이행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의 효력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분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소액사건재판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의 과정을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변론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및 제5조의4제1항).

-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③ 이의신청이 취하(取下)된 때
- ④ 이의신청과 변론기일의 지정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룬 것으로 보므로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제5항).

### Ⅲ. 소액사건재판의 실태조사<sup>3)</sup>

#### ○ 민사본안사건 접수현황

연도	제1심 전체	소액사건	소액사건 비율(%)
2014	1,136,935	798,215	70.2
2015	1,006,592	702,273	69.8
2016	973,310	686,407	70.5
2017	1,017,707	774,440	76.1
2018	959,270	708,760	73.9
<b>평균</b>	<b>1,018,763</b>	<b>734,019</b>	<b>72.1</b>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법원에 접수된 제1심 민사본안 사건은 평균 1,018,763건이며, 이중 소액사건은 734,019건으로 7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까지 소액사건의 접수 비율은 70% 전후였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이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개정을 통해 소액사건 적용대상을 3,0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소액사건 비중은 2017년 76.1%, 2018년 73.9%로 증가했다.

3)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사법연감(통계)



○ 민사소액심판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2014	798,215	795,180	99.6
2015	702,273	711,578	101.3
2016	686,407	677,024	98.6
2017	774,440	772,806	99.8
2018	708,760	699,632	97.8
<b>평균</b>	<b>734,019</b>	<b>731,244</b>	<b>99.6</b>

소액사건의 접수대비 처리비율은 최근 5년간 99.6%를 보였다.

○ 민사본안 소액사건 처리결과

연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건수	항소율(%)	건수	상고율(%)
2014	795,180	15,324	1.9	1,891	12.3
2015	711,578	17,199	2.4	1,997	11.6
2016	677,024	16,063	2.4	2,208	13.7
2017	772,806	17,263	2.2	2,244	13.0
2018	699,632	16,469	2.4	1,975	12.0
<b>평균</b>	<b>731,244</b>	<b>16,464</b>	<b>2.3</b>	<b>2,063</b>	<b>12.5</b>

2018년 처리 건수 대비 항소율은 2.4%, 상고율은 12.0%로 나타났으며,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처리 건수 대비 항소율은 2.3%로 매우 낮았고, 상고율도 12.5%에 지나지 않았다.

○ 민사본안사건(제1심)의 항소 현황

연도	합의			단독			소액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판결건수	항소건수	항소율(%)
2014	38,827	16,348	42.1	177,545	21,679	12.2	528,986	15,280	2.9
2015	32,545	14,423	44.3	161,259	22,298	13.8	441,516	15,491	3.5
2016	26,109	12,042	46.1	143,860	25,670	17.8	423,909	16,764	4.0
2017	27,723	11,228	40.5	125,085	24,481	19.6	496,166	16,712	3.4
2018	26,449	14,390	54.4	114,705	28,126	24.5	438,842	16,469	3.8
<b>평균</b>	<b>30,331</b>	<b>13,686</b>	<b>45.5</b>	<b>144,491</b>	<b>24,451</b>	<b>17.6</b>	<b>465,884</b>	<b>16,143</b>	<b>3.5</b>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항소심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5년간 평균적으로 항소율은 합의사건은 45.57%에 이르고, 단독사건은 17.6%인데 비해 소액사건은 불과 3.5%로 현저히 낮았다.

이처럼 소액사건에서 항소율이 낮은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 및 재항고 제한, 판결서의 판결 이유 기재 생략 등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더 다투고 싶어도 패소 이유를 알지 못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 민사소액심판 변호사 선임 건수 현황

연도	처리 건수	원고		피고		쌍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4	795,180	131,493	16.5	6,556	0.8	3,679	0.5
2015	711,578	126,592	17.8	7,225	1.0	4,195	0.6
2016	677,024	94,900	14.0	8,236	1.2	5,105	0.8
2017	772,806	89,557	11.6	9,154	1.2	5,919	0.8
2018	699,632	95,594	13.7	11,468	1.6	8,231	1.2
<b>평균</b>	<b>731,244</b>	<b>107,627</b>	<b>14.7</b>	<b>8,528</b>	<b>1.2</b>	<b>5,426</b>	<b>0.8</b>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소액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율은 평균 원고 14.7%, 피고 1.2%, 쌍방 모두 선임이 0.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모두 합쳐도 16.7%에 불과했다. 이는 당사자가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원고 보다 피고의 변호사 선임률이 매우 낮았는데, 소액사건 심판절차를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채권추심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만,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율이 소폭이긴 하지만 2009년 0.6%에서 2018년 1.6%로 꾸준히 늘어 있다. 2018년 소액사건의 변호사 선임은 원고가 13.7%, 피고 1.6%, 쌍방 모두 선임이 1.2%로였다.

### ○ 소액사건의 처리 유형

구분	합계	소장 각하 명령	판결						소취하 (간주)	이행 권고	조정	화해	안락	기타
			소계	원고 승소	원 고 일부승	원고 패소	각하	기타						
2014	795,180	14,164	528,986	498,157	14,019	15,554	1,149	107	89,116	107,879	26,750	13,952	76	14,257
2015	711,578	14,261	441,516	406,899	16,660	16,489	1,415	53	96,647	104,807	25,408	12,649	68	16,222
2016	677,024	12,060	423,909	382,359	21,730	17,896	1,869	55	99,050	94,738	22,781	12,047	53	12,386
2017	772,806	12,802	496,166	453,909	21,252	18,618	2,346	41	116,267	101,982	23,058	9,690	42	12,799
2018	699,632	11,819	438,842	392,583	23,749	20,153	2,306	51	102,271	100,171	22,104	9,140	80	15,205
<b>평균</b>	<b>731,244</b>	<b>13,021</b>	<b>465,884</b>	<b>426,781</b>	<b>19,482</b>	<b>17,742</b>	<b>1,817</b>	<b>61</b>	<b>100,670</b>	<b>101,915</b>	<b>24,020</b>	<b>11,496</b>	<b>64</b>	<b>14,174</b>

소액사건의 처리 유형은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평균 731,244건 중 465,884건에 해당하는 63.7%가 판결로 처리되었다. 판결로 처리된 사건 중에서 원고(일부) 승소가 446,263건으로 95.8%의 높은 승소율을 보인 반면, 원고 패소는 17,742건으로 3.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조정과 화해로 처리된 건수는 35,516건, 비율로 4.9%에 그쳤다.

## ○ 소액사건의 항소심 처리결과

구분	합계	각하 명령	판 결										소·항 소 취하	조정	화해 인낙	기타	
			항소 기각	취 소						소·항 소 취하	조정	화해 인낙					기타
				원고 승소	원 고 일부승	원고 패소	각하	환송	이송								
2014	15,324	122	4,354	295	1,402	982	256	-	1	22	2,999	3,275	1,593	23			
2015	17,199	112	4,664	501	1,564	1,108	269	-	-	16	3,377	3,657	1,914	17			
2016	16,063	108	4,711	440	1,666	952	310	-	-	24	2,868	3,068	1,901	15			
2017	17,263	113	4,742	454	1,771	997	317	2	4	8	3,258	3,325	2,249	23			
2018	16,469	102	5,348	320	1,895	1,065	262	2	1	14	2,966	3,024	1,451	19			
<b>평균</b>	<b>16,464</b>	<b>111</b>	<b>4,764</b>	<b>402</b>	<b>1,660</b>	<b>1,021</b>	<b>283</b>	<b>1</b>	<b>1</b>	<b>17</b>	<b>3,094</b>	<b>3,270</b>	<b>1,822</b>	<b>19</b>			

소액사건의 항소심이 처리된 결과를 평균적으로 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16,464건 중 8,149건으로 49.5%가 판결로 처리되었다. 그중 항소 기각이 4,764건으로 28.9%에 해당한다. 당사자에 의해 항소가 취소되는 비율도 18.8%로 높게 나타났으며, 항소심에서 조정되거나 화해·인낙으로 처리되는 비율도 27.2%로 높았다. 반면에 항소심이 각하되는 비율은 0.7%로 매우 낮았다.

## IV.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상고 및 재항고 제한의 문제점

### 1. 상고와 재항고 제한 및 제한의 이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3조).

민사소액사건은 대법원에의 상고와 재항고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는데,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3심제에 의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소송물의 가치와 이에 드는 비용, 노력과의 균형상 합리적이고 볼 수 없는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sup>4)</sup>

## 2. 대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 가.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은 『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sup>5)</sup>라고 판시하여, 단순한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위 판례에서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6)</sup>라고 판시하여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권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 나. 헌법재판소 결정례<sup>7)</sup>

(1)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

4)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7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5) 대법원 2004. 8. 20. 선고2003다1878 판결

6) 대법원 2004. 8. 20. 선고2003다1878 판결,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7)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90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保障)이 제대로 안 되면 헌법상(憲法上)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 침해(侵害)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

(2) 상소심(上訴審)에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헌법상(憲法上) 명문화(明文化)한 규정이 없고 상고(上告) 문제가 일반법률(一般法律)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上告法院)의 구성법관(構成法官)에 의한,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劃一的)으로 상고(上告)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소액사건(少額事件)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上告) 및 재항고(再抗告)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헌법(憲法) 제27조의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上告制度)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法律生活)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集中的)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公益上)의 요청(要請)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少額事件節次) 특유의 요청(要請)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少額事件上告制限) 제도가 결코 위헌적(違憲的)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少額事件審判法) 제3조는 대법원(大法院)에 상고(上告)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制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剝奪)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은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3.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여부

#### 가. 상고와 재항고의 제한 사유 및 이유서의 기재방식

첫 번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이다. 즉,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sup>8)</sup>

두 번째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sup>9)</sup>

또한,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즉,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sup>10)</sup> 법정상고이유 이외의 사유(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를 기재하면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29조).

위와 같이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를 제한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일반법령위반(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은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8)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

9) 대법원 2004. 5. 13.

10) 대법원 1988. 2. 23. 87다485

심리불속행사유보다도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에서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라는 것이 없으며, 상고를 제기해 봤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다.

#### 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법률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sup>11)</sup> 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상고권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일종의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기본권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소송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상고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이고, 위 법률조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 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이다.”<sup>12)</sup>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일응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의견과 같이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11)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90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12)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90헌바25 재판관 변정수 반대의견



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법률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다.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여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론으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sup>13)</sup>

즉, 판례와 다수의 견해는 소액사건에서 상고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재판청구권을 전면적,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고를 허용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두 가지 경우는 실제 발생하기 매우 어렵고 극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의 상고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2심제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액사건에서의 상고제한은 일반적으

13)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90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로 논의되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원론적으로 모든 일반사건에서의 상고제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소액사건에서 상고제한의 문제의 요점은 일반사건에 비하여 심각하게 차별한다는 데 있다. 불복가액에 의한 상고 제한 자체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14)

헌법재판소는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sup>15)</sup>라고 한 바,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은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에 해당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라는 이유를 들어 소액사건에서 상고제한을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단순히 소송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상고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이다.

## 라. 소결

판례위반(=법리오해)이 상고이유라고 하지만, 법리오해 중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자의적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

14) 독일에서도 가액상고제에 대한 비판이 많아 불복가액에 따른 상고제한제를 2001년 폐지되고 현재 상고허가제로 바뀌었다.

15)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90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16)</sup>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런데, 이 기준 또한 매우 자의적이어서, 변호사가 실제로 엇갈리는 하급심 판례를 잔뜩 첨부해서 '이렇게 판례가 중구난방이니 통일된 해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상고이유서를 써 내도 그냥 무시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같은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은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상고제도가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V. 1심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의 문제점

### 1. 판결서의 법적 의의와 이유 기재의 필요성

판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와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을 기재하고,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때 판결서는 첫째, 당사자에게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당해 판결에 대한 불복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상급법원에게 원심법원이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어떻게 재판하였는가를 나타내줌으로써 그 당부를 심판하는 기초를 형성하여 주며,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7)</sup>

16) 대법원 2004. 8. 20. 선고2003다1878 판결,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17) 김도훈, 재판에서의 이유 기재 생략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91면, 김성태,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에 대한 소고, 2017

따라서 판결서의 핵심적인 기능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판결의 정당성 내지 적법성을 알리는 것으로,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상소 또는 강제집행 등의 후속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상소심 법관에게는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심사를 용이하게 하며, 법률전문가에게는 판결을 분석하고 장래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법관 자신에 대하여는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 2.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의 제3항에 의하여 현재 소액사건 실무에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판사는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판결선고기일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고지할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판결선고시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공법 동조의 제2항의 규정도 준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소액재판 판결선고시 법정에서 당사자 및 사건번호를 호명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 출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판결서의 주문만 읽고 판결선고를 끝내고 있다.<sup>19)</sup>

## 3. 판결서이유기재의 생략에 따른 재판청구권 및 알권리의 침해가능성

소액사건심판절차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1심 재판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게 하고 있지만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소액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제한하는 것을

18) 오세혁, 판결서의 구조와 양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6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636-637면, 김성태,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판결서 이유기재 생략에 대한 소고, 2017

19) 최성준, 항소심에서 본 소액사건, 소액사건 심리방식 개선을 위한 법관 세미나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2001. 138면

합헌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당시에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심판이 실질적으로 1심에 가까운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심각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0. 10. 28.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있어서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는바,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sup>20)</sup>라고 하여 재판의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판결서이유기재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의 오류나 불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여, 항소를 하더라도 사실상 소액사건의 1심판결의 오류나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sup>21)</sup>

결국 소액사건심판법은 신속한 재판과 효율성만 최상의 가치로 삼아 재판의 적정

20)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결정

21) 김상영, 소액사건심판법의 제문제, 법률신문, 2003. 1. 16. 제3139호,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0, 23면

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개선방안

##### 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개선의 필요

소액사건심판법의 타당성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라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판결서이유기재 생략은 ‘법원’의 편익을 위한 제도로 보이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서이유기재 생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액사건이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국민을 설득시켜 공정한 재판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판결문의 충실한 기재가 필요하다. 소액사건은 대법원으로의 상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심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항소심 변론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사건보다도 더 충실한 판결이유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소액사건절차의 사정을 감안하면 판결서이유기재의 생략은 패소한 당사자나 승소한 당사자 모두에게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오히려 소액사건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sup>22)</sup>

##### 나. 소송경제와 신속을 위한 소액사건심판법과의 조화

한해 접수되는 소액사건의 수를 감안하면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판결서이유 기재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소액사건을 재판해야 하는 업무량과 재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판결이유 기재는 자칫하면 재판의 신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22)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지방법변호사협회, 2010, 24면

23) 이환승,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지방법변호사협회, 2010, 41면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판결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sup>24)</sup>

그렇다면 현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규정을 십분 활용하여, 판결서에 판결의 이유를 생략함으로써 당사자가 항소심 진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이를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과 재판받을 권리 및 알권리를 조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판결이유를 구술하는 것은 선고 당일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관례에 비추어볼 때 당사자에게 출석을 독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VI. 결어

### 가. 상고 및 재항고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라고 하면서,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판단기준을 단순한 금액의 과다로 판단하고 있다. 금액의 과다로 중요영역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물질만능주의 조장을 하는 것이고, 결국 재벌, 부자 등은 돈이 있는 곳으로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국가 스스로 국민의 권리 보호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좀 더 크고 국

24) 제11조의 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판단기준을 단순한 금액의 과다로만 판단하지 않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나. 판결서이유기재의 생략과 관련하여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및 재항고 제한으로 인하여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소액사건은 사실상 항소심이 최종심에 해당하므로, 일반사건에 비하여 항소심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심 판결이유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결과에 대한 알권리와 그로 인한 설득과 수궁이며, 또 하나는 1심 판결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위 판결이유에 설시된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항소심 진행에 그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란 단순히 적법하게 구성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형식적인 의미만이 아닐 것이다. 즉,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일 것이며, 과정상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재판을 받았는지 또한 해당될 것이며, 결과에 있어서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판결이유에 설시된 내용으로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파악하고 반복되어지는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소액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국가가 국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책무 또한 포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토 론 |

소액심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진술문

김진욱

대한변협 법제위원회·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진술문

김진욱 대한변협 법제위원회·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 현 황

※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17. 1. 1.]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 법원은 단독사건의 수를 줄여 단독판사의 심리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2000만원이던 소액사건 기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그 결과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되었고, 소액사건 수가 증가.

-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79만8215건 > 2015년 70만2273건 > 2016년 68만6407건으로 매해 감소하던 소액사건 수가 2017년 77만4440건으로 다시 증가.

- 소액재판 상당수는 소송대리인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됨. 2016년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소액사건 68만6407건 가운데 대리인이 없는 사건

은 56만8783건(82.8%)이었음. 소액재판은 보통 1~2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논리정연한 법리주장이 아닌 정돈되지 않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아 제대로 된 사실관계나 의견을 전달하기도 어려움.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액 일반사건 판사들은 한달 평균 850건(일반사건 450, 금융사건 400)을 처리(일주일마다 한번 재판을 열어 150~200개 사건을 심리하는데, 15분마다 10개 사건을 잡아두기 때문에 한 사건당 평균 1분30초를 할애하는 셈). 짧은 시간동안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사가 법정에서 소송절차, 법률용어, 법리주장 등 질문에 일일이 답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실.

## ■ 문제점

※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사건 수 증가는 신속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액재판 제도의 취지를 몰

각시킬 소지 존재. 즉,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2~3개월 정도면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접수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례도 보고되는 등 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취지가 그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현실 도래.

- 소액사건 당사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소액사건 대상이기만 하면 소액재판절차가 적용되는 바, 당사자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받기를 원할 경우 사법적 정의에 접근 기회의 폭이 제한되는 문제점 내포.

-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소액사건 당사자를 일반 민사사건 당사자와 달리 취급해 평등권 침해 비판 존재.

- 소액사건은 대법원への 상고와 재항고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단순히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상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진정한 의미의 소액사건이 아님에도 소액사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후 무조건 소액사건이라 일률적으로 상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 존재.

## ■ 제 언

- 국민은 재판에서 충분히 발언 및 질의하고 법관은 이에 경청하며 응답해줄 수 있도록 기일 지정을 적정한 사건 수로 조정, 소액 집중심리 재판부 확대, 법적 조력 시스템 마련 등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재판을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사법절차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일반 민사사건 판결이유와 같은 서술식 기재가 아니더라도, 주요한 판결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기재하여 당사자가 판결내용을 이해하고 상소를 결정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현행 제도상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소액재판을 받을 것인지 정식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



| 토 론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서론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사소송법이나 헌법을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실무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을 활용하는 변호사도 아닙니다만, 소비자법적 관점에서 소송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해온 학자의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에서 오늘 토론회에 초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크게 1)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법 제3조), 2) 판결서 이유기재의 생략(법 제11조2 제3항)의 두 가지를 들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상고허가제를 도입할 것과 판결서 이유기재의 생략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제자의 이러한 발제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약간의 사견을 덧붙이는 선에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2.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재결정의 논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3심을 허용할지 말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현행법 제3조는 상고 및 재항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sup>1)</sup> 이러한 현재의 결정은 소액사건에서의 소송의 신속성과 경제성의 요청을 중시한 판단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상고 및 재항고가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도 국민

1)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제에서 잘 지적된 것처럼 현행 제도는 상고 및 재항고의 이유를 1)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와 2)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하위법규의 상위 법규 위반에 대한 판단의 잘못으로 상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소액의 민사 사건에서 과연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후자의 경우 발제에서 지적된 것처럼 대법원조차도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로 적용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sup>2)</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제한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현행 제도가 사실상 2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판단대로라면 입법정책상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는 3심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만, 그 제한이 과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2심은 확보되어 있는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라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판 결과의 이유를 알아야 다음 심급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한 납득과 수용으로 이어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서 이유기재의 생략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 즉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처음부터 배제될 가능성을 제도자체가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서 현행 제도의 위 두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현재의 합헌논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등.

### 3.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는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제자는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독일에서와 같이 ‘상고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  
다만, 추측건대는 원심판결기록과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대법원이 상고가 필요한 사안  
을 선별하여 무분별한 상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요사안에 심리를 집중하자  
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고허가제는 1981년에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되었다가 1990년에 폐지  
된 역사가 있습니다. 폐지의 이유는 헌법이 보장한 ‘3번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  
구권’을 제한한다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1994년에 이를 보완하기 위  
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것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제4조 심리의  
불속행).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조감해본다면 소액사건에 한하여 상고허가제를 부활시키는 것도  
개선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행 상고 및 재항고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심리불  
속행제도의 틀 속에 편입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그 틀 속에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  
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4. “판결서 이유기재의 생략”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제자는 판결서 이유기재의 생략을 허용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의 개  
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  
다(삭제 제안?). 저는 동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개선방안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 이유기재가 원칙임을 선언하되 소액

사건의 취지를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	개정제안(안)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기재할 수 있다.

## 5. 기타 문제

오늘 발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삼아 개요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sup>3)</sup>

- (1) 소액사건의 범위 재조정: 300만 또는 500만원 이하
- (2)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의 관계 정립
- (3) 법명 개정(「소액소송법」) 내지 민사소송법으로의 통합
- (4) 통상소송절차로의 이행신청권의 부여

3) 이하 내용은 김상영, “소액사건심판법의 제문제”, 법률신문(2003.1.16.)을 참조한 것입니다.

| 토 론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신지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변호사





# 재판받을 권리 본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

신지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변호사

## I. 들어가며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평소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소액사건 재판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접할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 발제문을 통해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 제한, 1심 판결서에서의 이유 기재 생략의 문제점은 저도 실무를 하면서 자주 느끼고 있었던 문제점이었고 발제문이 제기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서민들의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많이 해왔는데, 경실련에서 이번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시면서 저에게 실무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위주로 이야기해 주기를 부탁하셔서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II.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 제한의 문제점

발제문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상고 및 재항고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소액사건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불복가액에 따른 차별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소액사건이라도

국민의 법률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상고 및 재항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고제도 자체를 상고허가제로 바꾸어 소액사건에 대해서도 상고 및 재항고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 중요 사건이나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까지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 제가 소송대리를 했던 소액사건 중에 공익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 사례1 우체국연금보험 사건

의뢰인은 우체국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이상하여 약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우체국에서 자의적으로 약관에 근거가 없는 연금 산출식을 적용하여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금액보다 적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그 동안 받은 연금액과 약관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의 차액인 52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의뢰인(원고)의 약관 해석과 우체국(피고 대한민국)의 약관 해석 중 어느 쪽의 약관 해석이 맞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약관 해석이 맞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체국에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례1에서 의뢰인은 다행히 승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위 사례1의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의뢰인은 과연 이에 대해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등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등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가 없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약관 해석의 문제여서 대법원이 직권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해결책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경우 소액사건에 대해 일반민사사건과 같이 상고 및 재항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상고 사건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법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소액사건 중에는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소액사건에 대해 일반민사사건과의 차별 없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삭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 및 재항고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을 고려하여 상고 및 재항고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고 및 재항고사유에 ‘공익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때’같은 사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현재의 민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상고이유와는 달라서 문제가 있고, 그러한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같은 법 제 4조의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결국 현행 상고제도 아래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만으로는 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발제자께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고허가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현재의 상고제도보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발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제자께서는 일반민사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상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액사건에서는 상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고허가제 도입에 찬성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Ⅲ. 1심 판결서의 이유기재 생략의 문제점

#### 1. 1심 판결서 이유기재 생략의 실태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이 바로 1심 판결서 이유기재 생략의 문제점입니다. 소액사건 중 상당수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서 이유기재가 필요 없고, 당사자간에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은 간단하게라도 이유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소송대리를 하면서 받아 본 소액사건 판결문에 간략하게 기재된 판결이유입니다.

지하철 발빠짐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 유

-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치료비 139,400원 중 97,580원(139,400원 × 0.7)과  
위자료 500,000원을 인정하여 합계 597,580원에 한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함.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의 의사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신체감정서, 감정인 이정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9. 25.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이후 약 1개월 간격으로 방사선사진 촬영 등의 정기적인 검진을 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임플란트주위염이나 인공치근 주위 골 흡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다만 원고의 부적절한 구강위생관리가 임플란트주위염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 임플란트 1개당 평균 2,600,000원(신체감정서 기준) × 2개 × 피고의 책임비율 60% = 3,120,000원

나. 위자료 : 1,000,000원

### 3. 결론

4,120,000원(= 3,120,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치료일인 2014.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함.

그러나 일부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많아 이유 기재가 꼭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까지 이유 기재를 생략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면서 8년간 12명 정도의 소액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 보았는데 그 중 3명 정도는 쟁점이 복잡하고 서면 공방이 많았던 사건에서도 판결서 작성시 판결이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 1심 판결서 이유기재 생략의 문제점

### 가.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판사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기 어려움

사례2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의뢰인(원고)은 트럭 운전자로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차량은 의뢰인 트럭의 오른쪽 뒤 4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진행 방향 앞에 의뢰인 트럭이 끼어들자 트럭보다 앞서가기 위해 4차로에서 5차로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트럭 앞 4차로로 들어오려고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하다가 이미 진로 변경을 거의 완료한 트럭과 충돌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고 경위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차량의 보복운전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피고의 과실비율이 의뢰자의 과실 비율보다 높게 인정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심 소액사건 담당 판사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금액

380만 원 중 30%인 114만 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판결 이유는 생략하였습니다.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3.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판결 이유도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이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첫기일은 조정기일로 지정되었으나 피고가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항소심 1회 변론기일에 저는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면서 원심의 과실비율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보겠다고 하였고, 1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피고에게 70%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을 원·피고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판사가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사항

1. 피고는 2019. 8. 31.까지 원고에게 26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판결 이유를 생략할 경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그 오류는 수정되기 어렵습니다. 발제문 19쪽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판결서는 법관 스스로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유가 생략된 판결서는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나. 사건을 대충 처리해 버리거나 타협적인 판결이 나오기 쉬움

사례3 (본소) 계불입금 (반소) 계금 등 사건

의뢰인(원고)은 제주(계주이기는 하지만 뇌병변장애인으로 계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계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이었습니다)로서 계원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 계불입금 1,467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현금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다른 계원들

이 탈 계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납입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미납한 계불입금이 없고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계금이 1,636만 원이 있다고 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를 시작할 초기부터 대부분 계좌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현금으로 납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다른 계원들이 탈 계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했다고 하면서 그러한 상계 처리에 의뢰인이 동의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계금은 이미 의뢰인이 지급한 것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의뢰인이 청구금액에서 산정시 상계하고 청구한 것이어서 반소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청구를 포기시키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반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청구는 일부라도 인용되고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소액사건 담당판사는 의뢰인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는 생략하였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보고 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충 처리해 버리거나,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하면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서로 청구를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타협적인 판결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의뢰인이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조정기일에 피고가 의뢰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미납 계불입금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

한 것입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면 더 많은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는 하나, 오히려 그것이 판사로 하여금 사건을 대충 처리하게 하거나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타협적인 결론을 내리기 쉽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 다. 항소심 진행을 어렵게 함

##### 사례4 교도소 수용자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

의뢰인(원고)은 과거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교도소 내에서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증세가 발생하여 교도소측에 적절한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교도소측에서는 허리디스크가 아닌 단순 허리 통증으로 진단하여 진통제만 처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허리디스크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의뢰인은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못한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교도소 내 의무기록 등을 보면 지나치게 장기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된 것이 분명해 보였고, 유사한 판례도 있어 일부 승소를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전부 패소였습니다. 1년 동안 9건의 준비서면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판결문에는 이유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법원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공단에 온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항소를 하였고, 저는 항소심까지는 맡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항소심 결

과가 궁금하여 의뢰인에게 확인해 보니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용하여 소송은 종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가 없는 소액사건은 항소이유를 기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항소이유를 작성하면서 판결이유를 추측해서 쓰는 것이 힘든데 일반인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판결이유 생략은 실질적으로 항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제문 21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1심 판결의 오류나 불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게 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판결보다는 되도록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2, 3, 4는 모두 판결이유가 없는 소액사건이었는데 사례2, 4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례3은 조정으로 종결된 것을 보면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를 취하할 것을 권유받거나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양보하여 조정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3. 개선방안

####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모든 소액사건에서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법원이 1심 재판의 충실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민사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건에 대해서 판결 이유기재 생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결 이유조차 적혀 있지 않은 판결문을 받아본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략하게 이유를 기재할 수 있다.’<sup>1)</sup>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1심 판결서에서 원칙적으로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건, 공시송달 사건 등 이유기재의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은 예외적으로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면 판결서 작성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판결서 이유 작성으로 인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판 인력을 더 확충하거나 현재 법원이 스마트법원 4.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판결문 작성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판결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1) 김성태,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판결서 이유기재 생략에 관한 소고, 비교법연구 제17권 3호 (2017. 12.),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7, 150면

####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소액사건 중 일부 사건에서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소액사건 중 이유기재가 생략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액사건 전부에 대해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유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 규정의 활용 방법

발제문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판결 선고시 구술로 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것을 녹음한 후 사후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고 녹음뿐만 아니라 판결선고조서에 구술로 설명한 이유 요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판결문의 판결 이유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출석의 문제가 있으나 2024년 이후 온라인재판이 가능하게 된다면 온라인으로 판결선고를 들을 수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 출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보입니다.

| 토 론 |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토론문

심제원

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





#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토론문

---

심제원 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

## 1. 들어가며

발표문에 있는 내용인 상고, 재항고 사유제한과 이유기재 생략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동의를 하고 있으며, 이하 발표문에서 논의하지 않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현재 시행중인 법에서의 입법취지 구현여부, 그리고 기존 소가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7. 1. 1.부터 소액사건이 3,000만원까지로 상향되었다. 3,000만원은 상당수 국민들의 1년치 연봉도 넘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000만원은 액수도 적으니 소송경제상 빨리 진행합니다. 상고도 제한합니다. 이유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납득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한다. 소액으로 보기에 소가 3,000만원은 너무 높다. 최초 입법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했던 취지로 보면 예외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 현재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어 이제는 원칙이 되고 있다.<sup>1)</sup>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만든 제도가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가 훨씬 지난 것이다.

---

1) 발표문 7면, 민사본안사건 접수현황 참조

## 2.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경위와 현 실태에 대한 의문

### 가. 제정경위 및 목적

소액사건심판법은 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이 되었다. 이 제정경위에 대하여는 당시 민사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절차이기에 영세 서민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해서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었다.<sup>2)</sup>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시 입법기조는

① 민사소송의 원칙인 변론주의 내지 당사자주의를 수정하여 직권주의를 가미한다. 이에 따라 직권증거조사제의 채택, 교호심문제가 아닌 직권심문제,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sup>3)</sup>

② 절차의 간편화, 저렴한 비용, 신속한 재판이념을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철을 시켰다. 사무소의 특별재판적, 소송대리인에 대한 특칙, 구술제소와 임의출석제, 무변론청구기각, 변론갱신절차의 특칙, 판결이유기재의 생략 등을 규정하였다.<sup>4)</sup>

③ 소송촉진과 상소권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여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였다.<sup>5)</sup>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발표문과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결국 영세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소액의 사건에 대하여 절차의 신속성을 보다 강조하여 특칙을 마련하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영세 서민들이 좀

2) 이시윤, 한국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경위와 평가, 민사소송, 15(2) 533면 참조

3) 이시윤, 전계논문 534면 참조

4) 이시윤, 전계논문 534, 535면 참조

5) 이시윤, 전계논문 535면 참조

더 편하고, 법원への 접근이 쉽게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 제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취지는 현재 법에도 남아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제7조 (기일지정 등)** ①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의2 (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의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①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서의 기재생략)** ①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포기·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상의 조문을 보면 크게 ① 절차의 간편함과 신속성을 보장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과 ② 소 제기를 쉽게하거나 증거절차에서 당사자의 편의 및 접근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 조서의 기재생략(법 제11조), 이유기재 생략(법제11조의 2)과 상고사유 제한(법 제3조) 등은 전자에 해당하고, 구술제소(법 제4조)와 임의출석 소제기(법 제5조), 야간등 재판 개정(법제7조의 2), 소송대리의 특칙(법 제8조), 직권증거조사(법 제10조)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 나. 현실태에 대한 의문

현재 법원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고난이도의 사건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큰틀에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며, 이런 취지에서 법의 특칙은 필요 최소한의 것이고 절대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다.<sup>6)</sup>

그런데 실제 소액사건의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당사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보

6) 이환승, 지정토론문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자료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0

장하는 제도는 실제 작동을 하는지가 의문이다. 과연 구술제소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법 제4조), 구술제소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전체 사건 중 얼마나 있는지, 당사자쌍방이 그냥 임의로 법원에 오면 변론을 할 수가 있는지(법 제5조),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법 제10조), 야간이나 공휴일에 소액사건 재판이 열린 사례가 있는지(법 제7조의2)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실태는 당사자들, 특히 대리인 없는 본인 소송을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최초 입법자들의 고뇌와 배려 등 국민들의 편익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문은 사문화가 되어있고, 오로지 법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부분만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상 실제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에 비해서 기일이 빨리 잡혀서 빠르게 진행되거나, 1회 기일 이전에 미리 증거를 신청하라고 하거나, 법정에서 혹시 당사자들이 놓치는 증거가 있는지 판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한 증인신문도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고, 그 절차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대리인이 신문을 하고 보충적으로 재판장이 신문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으로는 당사자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단독사건의 절차 진행과 유사하고, 단지 법원의 입장에서 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 즉 판결문에서 이유를 쓰지 않거나 상고가 제한되는 것만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 3. 3,000만원은 소액이 아니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예시로 우리나라의 소액사건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다. 2017년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현재

환율(1200원) 기준 60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60만엔으로 현재환율(1,077원)기준 6,462,060원이다.<sup>7)</sup> 비교법적인 논의를 뒤로 하더라도 3,000만원이 소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액사건절차에 대한 법률 및 실무적인 운영이 우리나라와 외국이 다르기에 단순한 가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법원에서 제시된 바 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1회 기일심리원칙, 조사의 즉시성, 반소금지, 즉일선고, 판결서 원본에 의하지 않은 선고 등 그야말로 소액에 해당하는 분쟁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제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배심재판의 배제, 증거개시절차의 생략, 소답절차<sup>8)</sup>(pleading)의 생략, 직권증거조사, 원고의 항소권 배제 등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와 전혀 다른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외국의 실무운영이 우리와 전혀 다른 특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가 3,000만원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정당시 1973년에는 소액의 기준이 20만원 이하였고, 1975년 30만원 이하, 1980년 50만원 이하, 1981년 100만원 이하, 1983년 200만원 이하, 1987년 500만원 이하, 1993년 1000만원 이하, 1997년 2,000만원 이하, 2017년 3,000만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1970년대 입법당시의 통계는 확인이 어렵지만 최근의 통계를 보면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소액사건이다.

분명히 소액사건심판법의 입법취지는 소액의 경우에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예외적인 절차이고, 특별한 절차이다. 그래서 일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기제도 생략이 가능하고, 상고나 재항고도 제한을 두는 것이 용인된 것이다. 그런데 현

7) 김도훈, 소액사건 범위확대와 이에 대응한 변화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78), 250면, 2018

8) 법정에서 하는 답변 내지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이환승, 지정토론문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자료집, 서울지방변호사회, 38면 이하, 2010

재는 예외적인 절차(소액사건심판)가 원칙인 민사본안절차(단독, 합의사건)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게 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는 국민의 재판권 보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없더라도 뭔가 적절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sup>10)</sup>

#### 4. 개선방향

사건 당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재판진행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중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태는 오로지 신속함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만 몰두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이제는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되었다.

우선 소액사건의 소가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 3,000만원은 너무 높다. 이를 1,000만원이나 다른 금액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00만원 이하의 사건수도 전체 민사본안 사건수의 63%를 넘고 있다.<sup>11)</sup> 1,000만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 현재와 같은 특칙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소액사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것인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sup>12)</sup>

두번째로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액사건의 기준을 낮추고, 예를 들어 소액사건의 소가 기준을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었다고 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선택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간이한 절차인 소액사건으로 진행을 할 것인

10) 김도훈, 소액사건 범위확대와 이에 대응한 변화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78), 252면, 2018

11) 2018년 민사본안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총 959,270건 중 1,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607,757건으로 63.1%에 해당한다. 2019년 사법연감 772면 참조

12) 김도훈, 소액사건 범위확대와 이에 대응한 변화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78), 248면, 2018

지, 아니면 일반 단독사건과 같이 좀더 충실하고 원칙적인 심리를 받을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을 하게 해야한다. 현재는 무조건 소가 기준으로 배당을 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기에 당사자가 거부할 권리가 없다. 영세 서민들,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최초 입법취지였음을 고려할 때,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는 보장될 필요가 있다.<sup>13)</sup>

세 번째로 이유기재의 생략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를 좀더 구체화 하여야 한다. 1,000만원 미만의 사건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증거와 이유가 명백한 사건들 예를 들어 구상금, 대여금 등의 경우에만 이유기재가 생략되도록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에 규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반대로 당사자가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4)</sup>

---

13) 김도훈, 전계논문, 263면 이하에서는 ① 1,000만원 이하, ②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 ③ 2,0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구분하여 ①번은 일률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②번은 원칙적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적용, ③번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적용, 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으로 구분을 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14) 실무에서는 ① 상계항변이 제출되는 등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된 경우, ②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③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 ④ 사안이 특히 복잡한 경우 등에 판결문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환승, 지정토론문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자료집, 서울지방변호사회, 43면, 2010



| 토 론 |

오로지 서민, 민생의 편에 서서  
소액사건 재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오로지 서민, 민생의 편에 서서 소액사건 재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안진걸 현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1. 먼저, 우리 서민들에게, 사법서비스를 설계하고 용인한 우리 주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판제도, 그중에서도 소액사건 재판제도의 개선이라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의 문제의식 전반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음.

- 소액사건 재판은 우리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임. 3천만원 이하의 분쟁이 일상 생활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발제문의 발표만 봐도 전체 민사사건에서 무려 72% 정도가 소액사건임을 알 수 있음. 최근에는 새로운 소액사건도 늘어나고 있음. 예를 들면, 권리금 분쟁에서도 권리금이 3천만원이 안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가들도 많고, 그들도 소액사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새로이 생기고 있는 것임. 물론, 그 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잘 조정이 되면 더 좋을 것임. 그런데, 소액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음.

- 첫째는, 소송 절차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어렵기만 한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임. 소액사건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

- 둘째는, 재판이나 소송 관련 절차, 준비, 재판 및 법률 용어 등이 나 홀로 소송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결정적으로 판결문조차 나오지 않기에 승소든, 패소든 어떻게 본인이 승소한 것인지, 어찌다가 패소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소송’이 되어버린 것임.

- 셋째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절차적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무사들의 소액사건 재판 소송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

렴한 비용으로 소액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법무사 배제 소송’이 되어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2. 소액 사건의 재판 범위가 소송가액 3천만원으로 확대된 것도 의미가 있고, 소액사건을 신속하게 간편하게 진행하는 여러 절차상의 특례를 둔 것도 의미는 있을 것이지만, 재판에서 핵심은 적절하면서도 저렴한 조력, 쉬운 재판, 재판받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결국은 그를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 등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임.

3. 그래서, “특히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본안 사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등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음에도”라는 발제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함.

- 소액사건 재판 관련해서, 구술에 따른 소 제기, 이행 권고 결정 등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소액사건에서 항소율이 매우 낮은 이유, 변호사 선임률이 극히 미미한 상황,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 판결문에 판결 이유조차 기술하지 않는 것 등은 분명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4.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의 의무적 기재, 3심의 보장, 소액사건 재판에 한해서 법무사의 소송대리 보장 등이 진지하고,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5. 우리 서민들의 관점에서 일반 재판이나 소액사건 재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고 비판적 문제의식이 깊음. 서민들에겐 늘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법률서비스의 적절성 및 변호사 수임료 비용문제이기 때문임. 최근 변호사 숫자가 많이 증가했고 예전보다는 수임료가 낮아졌다지만, 지금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드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또한 변호사를 구하거나 접하기 어려운 무변촌이나 법률서비스 소외 계층도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체 소액사건 중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나 홀로 소송 사건)의 비율이 무려 83.2%에 달했다는 것을 보면, 서민들의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잘 알 수 있음. 민생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비용이라는 또 다른 민생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그래서 서민들은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들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온 측면은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임. 그러나 변호사법은 독점적으로 모든 법률 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변호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법무사에게는 서류작성·제출의 대행권만을 부여할 뿐인데, 이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사실상의 법률대리인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매 서류작성·제출에 있어서의 위임절차를 계속 반복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무사에게 기존에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온 개인회생 사건을 비롯한 비송사건 등에 있어서는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음. 법무사에게 일반 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에 국한해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예전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을 허용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님. 이는 늘 시간과 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비용을 절감하고 형식만 남은 불필요한 위임절차를 없애서 생업에 전념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개선임.

- 특히, 서민들 대부분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재판에 있어서는 비용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런 소액사건 재판만큼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런 여론을 반영한 법무사법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은 매번 국회에 단골법안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참에, 소액사건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이 정기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물론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있음.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도 법무사들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가 무변론 문제 해결과 나 홀로 소송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 진행의 문제, 변호사 업무영역에 대한 침해 여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숫자가 급증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하지만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 진행이라는 점은 법무사들이 이미 일정한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또 법무사 양성과정에서 소액사건 재판 대리 관련 교육을 추가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임.

-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업무영역에 대한 새로운 직군의 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소액사건의 대부분이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나 홀로 소송이란 점을 상기하면 법무사들이 제한적으로 저렴한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영역을 크게 침범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위 법사위 보고서는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에 대해 ‘소액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고 소액사건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음. 지금 서민들에게 이와 같은 저렴한 소송대리서비스가 매우 절실한데, 그래서 법무사들의 소액사건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변호사 비용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해야 할 것임. 또한, 법무사들로부터 제대로 된 소송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사후 점검 및 모니터링 조치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임.

- 소액사건 재판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을 포함한 모든 법률서비스 관련 문제들은,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부작용은 없는지, 서민들에게 어떤 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액사건의 경우에 한해서, 법무사에게 제한적인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큰 부작용은 없으면서도 비용이나 접근성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회는 서둘러 관련 번안 개정예에 나서야 할 것임.

-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소액사건 재판제도 전반을 서민들의 관점에서, 주권자들의 관점에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임. 관련 상임위에서 매일처럼 법안 심사 회의를 열어서라도 소액사건 재판이 우리 국민들, 우리 주권자들, 우리 서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토 론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최미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변호사





#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 심판의 개선방안

최미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변호사

## 1. 들어가며

민사본안 사건 중 약 70% 해당하는 소액 사건은 액수가 비교적 적더라도 당사자에게 절실한 경우가 많고, 소액재판을 통해 처음 법원을 접하게 되는 다수의 국민은 재판 절차 운영에 따라 사법부의 신뢰가 좌우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신속성과 소송경제 확보 등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당사자들이 절차상 실질적인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발제자님이 ① 상고 및 재항고 제한 관련, ②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관련하여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개선안에 관하여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 2. 상고 및 재항고 제한 관련(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발제문에서는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상고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의 원칙 위반이므로 가액에 따른 상고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상고허가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상고허가제를 염두해 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고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사건들에 대해 상고허가제를 두어 **평등의 측면에서 소액사건 당사자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공감합니다.

다만, 1990. 9. 1. 폐지되기 전의 우리나라의 상고허가제나 현재 미국의 상고허가제,

일본의 상고수리제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는 있으나, 헌법, 법령, 판례 위반의 경우 등 일부에 대하여만 권리상고를 인정하고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는 상고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하여 상고심 판단을 받는 건수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고허가제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상고사건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보는 반면에, 대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평등의 측면이 아닌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에 비하여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도리어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만 주어,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도 외면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관련(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 가. 판결서 이유 기재 필요성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1조의2제3항),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의 기재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소액재판의 환경 아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판결이유의 기재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당사자에게 판결 주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에 관해 그 내용을 알려주어 당사자를 설득하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유가 없으면 당사자가 그 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항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종국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항소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작성이 곤란하고, 항소심법원도 원심법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재판했는지 파악하기 어렵

고, 기관력이 미치는 범위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을 문제가 있습니다.

#### 나. 판결 선고 시 녹음 방안에 대하여

발제자님이 제안한 판결 선고 시 고지되는 판결이유를 법원으로 하여금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녹음파일의 사본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발제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판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고지할 대상이 없게 되는 경우 이유의 요지를 구술하지 않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출석을 독려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이 재판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유 구술 시 녹음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다. 판결서 이유 기재 방안

전체 소액사건에 대해 판결이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소액사건 규모에 비추어 재판부 당 소액재판 부담이 폭증하여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①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경우와 같이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관력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②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경우, ③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해배상사건의 경우 과실비율이나 금액산정의 근거 등), ④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요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거나 항변이 배척되는 등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이 특히 필요한 경우, ⑥ 청구의 병합이나 변론병합 등으로 기관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과의 관계에서 소송물의 특징에 필요한 경우

다만, 이유 기재의 정도는 그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방향으로, 간소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판결서의 답변기능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4. 맺음말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절차가 지향하는 적정·공평·신속·경제의 이상 중 신속성과 경제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소액재판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재판에서도 적정성과 공평성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신속한 재판’과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의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를 조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분쟁성 사건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소액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도 운영 점검을 통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소액재판절차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을 끝으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019-04-01	백혜련의원 등 10인	법원은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2019-04-30	표창원의원 등 10인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임(안 제2조).
2017-01-20	이용호의원 등 10인	소액사건심판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장을 판결서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단서 신설).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9495, 2019-04-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2심 판결이 헌법 또는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심이 사실상 최종심인 상황에서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를 구술로만 설명할 뿐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항소심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당사자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1條의2(判決에 관한 特例) ① ~ ③ (생략) <신 설>	第11條의2(判決에 관한 特例)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Z9N0L4B0V1X1A0D5T3O2W7H7A5D0](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Z9N0L4B0V1X1A0D5T3O2W7H7A5D0)

○ 검토보고서

소액사건의 범위가 사건의 경중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만으로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의할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지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고려할 때 다소 부당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고지되는 판결이유를 법원으로 하여금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한 다른 심판절차와의 형평성, 판결이유를 구술하는 것은 선고 당일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관례에 비추어볼 때 당사자에게 출석을 독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이 재판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유 구술 시 녹음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표창원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20072, 2019-04-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분류하며,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임(안 제2조).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第2條(適用範圍등) ①이 법은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의 管轄事件中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民事事件(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lt;단서 신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第2條(適用範圍등) ①-----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p>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E9W0T4Z3V0T1E4V5U8A1H7U3S4K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E9W0T4Z3V0T1E4V5U8A1H7U3S4K3)

○ 검토보고서 없음

### 3.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5176, 2017-01-20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예규로 재판서, 사건기록 등을 5년 보존 후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소액사건심판 판결 후 5년이 경과하면 판결서 외에 재판 관련 서류를 파기하므로 당사자는 판결서의 주문만 확인할 수 있고 판결이 내려진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액사건심판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장을 판결서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단서 신설).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第11條의2(判決에 관한 特例) ①判決의 宣告는 辯論終結후 즉시 할 수 있다.</p> <p>②判決을 宣告함에는 主文을 낭독하고 主文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口述로 說明 하여야 한다.</p> <p>③判決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p> <p>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주문이----- -----구술로 說明하 여야-----.</p> <p>③ 판결서에는-----규 정에----- ----- 다만,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을 첨 부하여야 한다.</p>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S7B0K1X2C0K1R1D0T1C0O6O9V3J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S7B0K1X2C0K1R1D0T1C0O6O9V3J4)



## ○ 검토보고서

실무상 소 제기 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일부 소 취하의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장의 첨부만으로는 판결 주문의 근거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현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해 법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서류는 예외 없이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해야 하고, 당사자 등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하는 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사무관 등이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송기록이 영구 보존되므로 소송기록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예외의 경우는 1. 상소심 사건의 원심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2. 재심 또는 준재심 사건의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3. 기본이 되는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으로 정하여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공고한 사건인데, 이 경우에도 재판장 등은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를 명할 수 있으며, 향후 원심사건부터 전자소송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외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임.

민사본안 접수건수 중 전자제소 비율이 2011년 21.8%에서 2016년 60% 이상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향후 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개정안의 실익이 많지 않게 되므로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소장을 첨부하도록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